

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4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2. 2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2. 2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3. 25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읍면존치·이관사무의 재조정 확정으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읍면 위임조례 사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오수처리시설관련 업무 본청이관(안 별표)

나. 도로 및 소하천 점·사용허가 업무 본청이관(안 별표)

다.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업무전반 본청이관(안 별표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읍면 사무중 존치와 이관사무를 재조정 확정함에 따라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읍면위임조례 사무를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서 규제·단속 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 성격상 광역성·전문성·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, 기타 본청수행의 바람직한 일반행정 사무등을 본청에 이관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3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